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9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 한병도 · 신영대 · 장철민

이해식 • 진선미 • 강유정

이원택 • 전진숙 • 이소영

강선우 의원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및 협의요청권 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달비 등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을 가맹금에 포함시켜 지불하게 하거나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일부 가맹본부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거나 매년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제한 제도가 보복조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제재

조항이 없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 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맹금의 범위에 배달비를 제외하도록 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매출액에는 가맹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제6조의6 신설).
-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게 하는 필수물품의 요건을 규정하고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 등은 제외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 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의 6제1항 신설).
- 라.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 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한 규정을 삭제함(제13조제2항 삭제).
- 마.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 체로부터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제14조의3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법률 제 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가맹본부"를 "배달비 등 가맹본 부"로 한다.

제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6(가맹금 산정)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매출액에는 제2조제6호 단서에 따른 대 가를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상품 또는 용역"을 "상품·용역, 설비, 그 밖의 물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기준은"을 "기준과 제2항 각 호 에 따른 필수물품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필수물품"이라 한다)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구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에 다른 재료를 첨가하여 단순

- 히 혼합한 물품 또는 소량 포장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물품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 표권을 보호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 대방을 특정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거래상대방을 특정하는 내용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물품일 것

제12조의6 제목 중 "실시"를 "비용분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을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으로, "부담에"를 "분담에"로 하며, 같은 항단서 중 "부담"을 "분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을 "비용을 분담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맹점사업자와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가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

을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등록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 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가맹본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3(종전의 제14조의2) 제목 중 "협의 등"을 "협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을 "제14조 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로서 특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성실하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로, "제12조의6제1항"을 "제12조의6제1항·제2항"으로,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제14조의3제3항 또는 제15조의2제3항·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로, "제12조의6제1항"을 "제12조의6제1항·제2항"으로,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제14조의3제3항 또는 제15조의2제3항·제6항"으로 한다.

제43조제6항제7호 중 "제12조의6제2항"을 "제12조의6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6제1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 한다.

제3조(가맹계약 갱신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거 나 갱신된 가맹계약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제4조(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이 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본다. 다

만,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	6
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u>가맹본</u>	<u>배달비</u>
<u>부</u> 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	<u>등 가맹본부</u>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	
가를 제외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6조의6(가맹금 산정) 가맹본부
	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매출액에는 제2조제6
	호 단서에 따른 대가를 제외하
	<u>여야 한다.</u>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	

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 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 다.

- 1. (생략)
-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u>상</u> 2. ------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 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 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 6. (생략) <u><신 설></u>

- 1. (현행과 같음)
- 품·용역, 설비, 그 밖의 물품 <u>등</u>-----
 - 3. ~ 6.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필수물품"이라 한다)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부터 구입하게 할 수 있다. 다 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 할 수 있는 물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에 다른 재료를 첨가하 여 단순히 혼합한 물품 또는 소량 포장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과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시 및 집행 내역 통보) <신 설>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물품이라고 객관 적으로 인정될 것

-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 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거나 상 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 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 적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 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대방을 특정한다는 사 실을 알리고 거래상대방을 특 정하는 내용에 관하여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물품 일 것
- ③ ----각 호에 따른---------기준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필수물품의 구체적 인 기준과 범위는----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의 실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의 비 용분담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 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 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 • 판 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 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 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 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 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 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 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맹점사
업자와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에도 가맹점사업자가 그 비용
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
<u> </u>
<u>에</u>
분담
<u>③</u>
비용으 브다치느
<u> 비용을 분담하는</u>
<u> 미중을 한답이는</u>

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 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내역 통보·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ㅈ (생 략)

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 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 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설>

<u>④</u> <u>체2항</u> <u>제3호</u>			
 제13조(가맹계약의 (현행과 같음)	 갱신	등)	1
<삭 제>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등록 등) ① 가맹점사 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 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 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게 그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

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 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 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그 사 실을 해당 가맹본부에 즉시 알 려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u>제14조의3</u>(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u>협의 요청</u>) <u><삭</u> <u>제></u>

<u>제14조의2</u>(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u>협의 등</u>) ① 가 <u>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u> 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 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 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 다.

-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 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 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 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 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 적으로 협의한다.

④ (생 략)

② <u>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등</u>
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로서 특
<u>정</u>
③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 (혀해고 간으)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 | <삭 제> 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 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 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 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 저 원회는 제6조의5제1항 · 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 조제1항, 제11조제1항 · 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 제2항, 제12조의3제1항 · 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 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 5조의2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 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 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 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 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세33조(시정조치) ①
ગો 10 7
<u>제12조</u>
제12조의6
<u>제1항·제2항</u>
<u>제14조의3제3항 또는 제15조</u>
<u> 의2제3항 • 제6항</u>

②·③ (생 략)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 지 회는 제6조의5제1항 · 제4항, 제 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제1항 · 제2항, 제 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 제 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 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 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 ~ ⑤ (생

(2) · (3) (현행과 같음)		
제35조(과징금) ①		
<u>제12</u>		
조		
제12조의6제1항		
· 제2항제1		
4조의3제3항 또는 제15조의2제		
<u> 3항·제6항</u>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43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략)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6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제12조의6제2항</u> 을 위반하여	7. <u>제12조의6제3항</u>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	
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	
니한 자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